**등록부 관리 지침**

제정 2023. 02. 23.

1. **(목적)** 본 지침은 탄소감축인증표준(KCCI Carbon Standard, 이하 “KCS”)에 따른 등록부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등록부의 구축)**
   1. 탄소감축인증센터는 방법론 등록, 감축사업 등록, 감축사업 인증실적의 발행·이전·처분 등 일련의 과정이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된 등록부를 구축하여야 하며, 별표 5-1에 따라 등록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계정 발급 및 관리 기능
      2. 감축사업의 신청, 적합성 검토, 등록, 모니터링, 검증, 인증 등을 기록·관리하는 기능
      3. 감축사업 인증실적의 발행·이전·처분 등을 기록·관리하는 기능
      4. 기타 탄소감축인증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기능
3. **(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1. 탄소감축인증센터는 가용성과 기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등록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감축사업 인증실적의 발행·이전·처분 등에 대하여 전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축인증센터는 등록부 운영과 등록부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1. 감축사업 방법론
      2. 감축사업으로 신청 또는 등록된 사업의 목록 및 일반정보
      3. 감축사업 인증실적
4. **(보유계정 등의 등록)**
   1. 감축사업 참여자가 되어 보유계정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탄소감축인증센터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른 계정 생성 신청서
      2.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제6조에 따른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동의서
      4.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2. 제1항에 따른 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 18세 이상의 자
      2. 법인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정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감축사업 보유계정 등록신청서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인 또는 법인 명의의 보유 계정을 등록부에 등록한다.
5. **(등록신청의 반려)**
   1.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제4조에 따른 계정의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정 등록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최근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경우
      5. 계정 등록신청이 불공정거래 또는 위법한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2.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제1항에 따라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거래 계정 등록신청 반려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은 그 반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탄소감축인증센터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6.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
   1. 계정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개인 계정의 경우 계정의 명의자 본인
      2. 법인 계정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2. 법인 계정의 대표자는 2인 이하의 계정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3. 보유계정에서의 감축사업 인증실적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와 제2항에 따른 계정관리인에 한한다.
7. **(계정 정지)**
   1. 탄소감축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보유계정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계정 정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래, 권리·의무 승계, 감축사업 및 인증실적 취소의 청산·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정지된 계정인 경우에도 감축사업 인증실적을 이전시킬 수 있다.
      1. 계정을 자금세탁, 테러목적의 자금 유용, 탈세, 사기 등 범죄목적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잘못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반복해서 계정의 사용을 시도한 경우
      3. 계정대표자가 궐위된 경우
      4. 계정 정보 갱신의무를 해태한 경우
      5. 감축사업 인증실적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6. 권리의 승계를 신청한 경우
      7. 감축사업 및 인증실적 승인 취소 사전 통보를 받은 경우
   2.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유계정 사용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계정 정지를 종료하여야 한다.
8. **(계정 폐쇄)**
   1. 탄소감축인증센터는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보유계정의 폐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을 폐쇄하여야 한다.
   2.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제1항에 따라 계정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보유계정의 감축사업 인증실적을 취소계정으로 이전한다.
9. **(계정정보의 갱신)**
   1. 계정대표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보유계정과 관련하여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탄소감축인증센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탄소감축인증센터는 모든 계정대표자가 등록부에 등록된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련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탄소감축인증센터는 모든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련하여 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년 말일까지 이를 통보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5.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주기적으로 등록부에 등록된 계정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해당 계정대표자에게 정보의 갱신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10.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변경)**
    1.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이 교체된 경우 새로운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은 탄소감축인증센터에게 이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의 변경을 신청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의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부칙**(2023. 02.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